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①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를 각각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를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로 한

다.

제157조의2제2항 중 “제26조의3” 을 “제26조의4” 로 한다.

별표 15의2의 승용자동차의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란 중 “4년” 을 “5년” 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신청인란 및 사용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임시운행허가기간” 을 각각 “임시운행허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시험·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제1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 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1호”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제2항제1호” 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2호”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제2항제2호” 로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3호”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제2항제3호”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미만으로 남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처음으로 영 제7조제4항 단서

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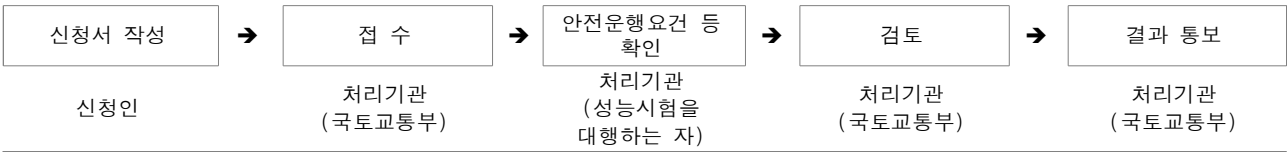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 계획서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